

▣ 제 1 주 제

유튜브 조정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보부장, 변호사

유튜브 조정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2025. 12. 4.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1. 서론

유튜브 조정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유튜브 조정에 대한 조작적 정의

-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을 언론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
-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유튜브) 또는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
- 유튜브 외에도 ‘네이버TV’, ‘다음TV’와 같은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이 다수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특정 글로벌 동영상서비스의 명칭을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차용함 ←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



유튜브 조정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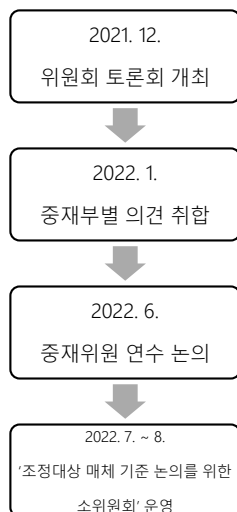
유튜브 조정의 기원

- 2021. 12. 22.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토론회
- 임상혁 변호사(당시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성 검토' 발표
- 발표의 요지
 - 필요성(유튜브 영향력, 수용자 인식, 사회적 혼란)
 - 현행 언론중재법 해석으로 피신청인 적격 확장 가능 → 인터넷신문
 - ✓ 언론중재법 목적 조항(제1조) 적극적 해석
 - ✓ 인터넷신문 요건(정보처리장치+통신망/ 보도, 논평, 여론, 정보 전파 목적의 전자간행물/ 독자성 및 지속성) 충족
 - ✓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 불필요

II 향후 전망 및 입법 제안

- 1 유형: 기존 언론사가 보도를 하면서, 유튜브가 같이 올라간 경우
→ 원칙적인 조정 대상 1
- 2 유형: 기존 언론사가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유튜브 기사만 올라간 경우
→ 원칙적인 조정 대상 2
- 3 유형: 뉴스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올린 경우
→ 적극적인 조정 안내 및 노력
- 4 유형: 뉴스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유튜브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올린 경우
→ 현행법상 조정 대상 X

유튜브 조정의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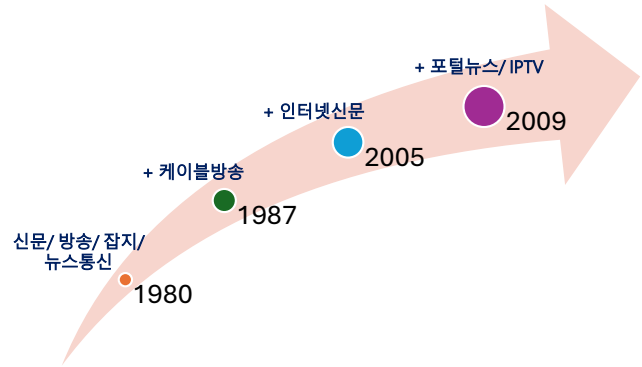


<콘텐츠 제공 주체 및 내용/형식에 따른 조정대상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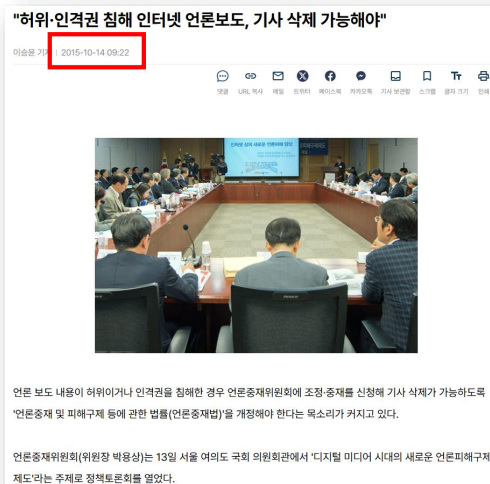
구분	제공 주체	내용 / 형식	조정대상 여부
1유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본 매체에 게재된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등 채널에 동일하게 게시	O
2유형		본 매체에 게재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등 채널에만 게시	O
		보도	O
		보도 아님	X
3유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사업자) 해당 여부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등 채널'에 게시 ->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보
4유형		다양한 정보를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유튜브 등 채널'에 게시 -> '슈카월드' 등	X

유튜브 조정 논의 배경

- 2009년 이후 멈춰버린 언론중재법
- 2005. 1. 27. 언론중재법 제정
- 2009. 2. 6. 언론중재법 개정(포털뉴스, IPTV)
- 2009년 법 개정 → 처음이자 유일한 실질적 법 개정
- 언론으로 실제 기능하고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한 매체 → 법 개정을 통해 언론 범주에 포섭



유튜브 조정 논의 배경



2015. 10. 14.자 <법률신문> 기사(<https://www.lawtimes.co.kr/news/96105>)

발표의 목적

-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유튜브 조정 현황(1,2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제시 →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 기존 유튜브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의 차별점 → 기존 논의는 위원회 실무처리기준상 '조정대상 아닌 유튜브 채널'(3,4유형)이 중심이었음



2024. 12. 4. 토론회



2025. 6. 13. 언론중재법 제정 20주년 기념토론회

유튜브 조정 현황 분석

사건 처리

- 2022. 1. 1. ~ 2025. 8. 31.
- 1,132건 분석

실무자 인식

- 조사팀, 조정정책팀, 접수상담팀 13인
- 13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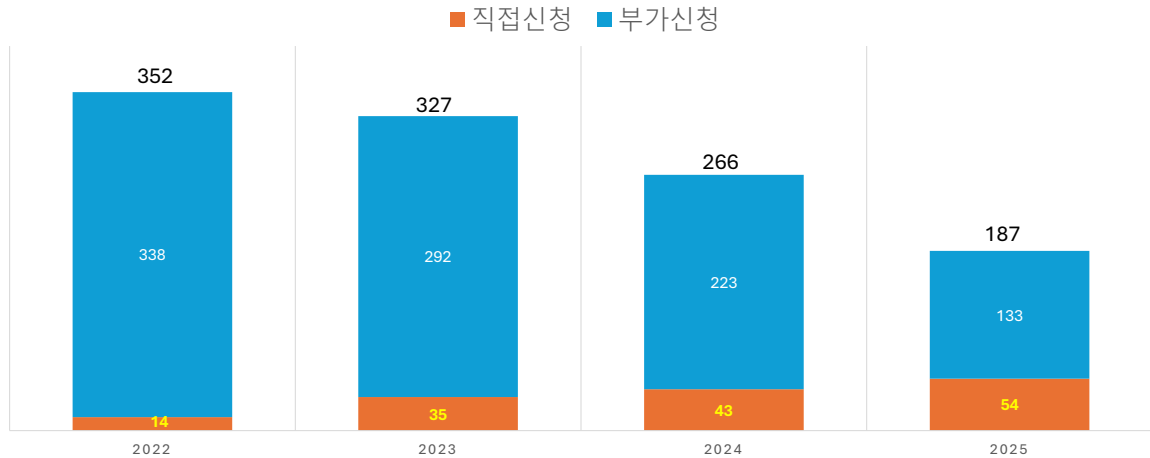
설문 문항

1. 현재 위원회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1,2유형)에 한해 사건 접수 및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과 비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3,4유형)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 1-1.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주십시오.
2. 현재 위원회에서는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에 관해 해당 콘텐츠가 기존 매체에서 보도한 것이면 1유형으로, 유튜브 자체 콘텐츠이면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1유형과 2유형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 2-1.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주십시오.
3. 2유형에 해당하는 언론사 운영 유튜브 채널의 경우, 해당 콘텐츠가 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정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 3-1.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기재해주십시오.
4. 현재 위원회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한하여 사건 접수 및 심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처리방식은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4-1. 근거한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조문을 기재해주십시오.
 - 4-2. 근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기재해주십시오.
5. 현재 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 매체의 범위를 언론중재법을 근거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매체가 아니라면 해당 조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무처리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5-1.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나 잘 모르겠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해주십시오.
6. 조정대상 매체가 아니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있는 현재의 사건처리방식에 비추어 볼 때, 유튜브 채널 중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한하여 사건 접수 및 심리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실무처리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6-1.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해주십시오.

2. 현황 분석

유튜브 조정(2022~2025)의 현황(사건수, 처리결과 등)은 어떠한가?
일반 조정과 비교되는 유튜브 조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유튜브 조정 연도별 사건수



직접 신청 - 유튜브 채널을 조정대상 보도물로 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조정대상	매체명	조선일보-YouTube
	보도일자	2025-08-24
	보도면 / 보도시간	<행하고 화들날> 면 (https://www.youtube.com/watch?v=kvYdb6TFi7M)
	보도가 있음을 안 날	2025-08-25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 (조선일보-YouTube)

피신청인은 유튜브 조선일보 채널과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아래의 보도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부가 신청 - 유튜브 채널을 조정대상 보도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신청취지에 비추어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제 역시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조정신청취지

조정대상	매체명	인터넷 SBS
	보도일자	2025-09-04
	보도면 / 보도시간	뉴스영상/정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43038)
	보도가 있음을 안 날	2025-09-18

1. 피신청인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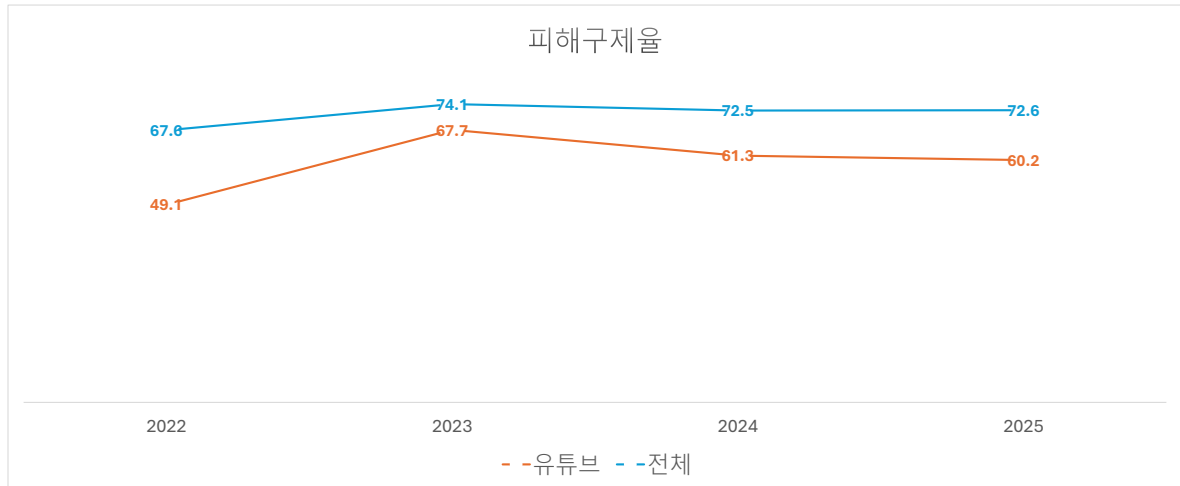
가. 피신청인은 인터넷 SBS 뉴스영상/정치면과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각 게재하고,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SBS 뉴스>에 게재된 동일 제하의 뉴스 콘텐츠(<https://www.youtube.com/watch?v=674mxASEXhQ>) 더보기 란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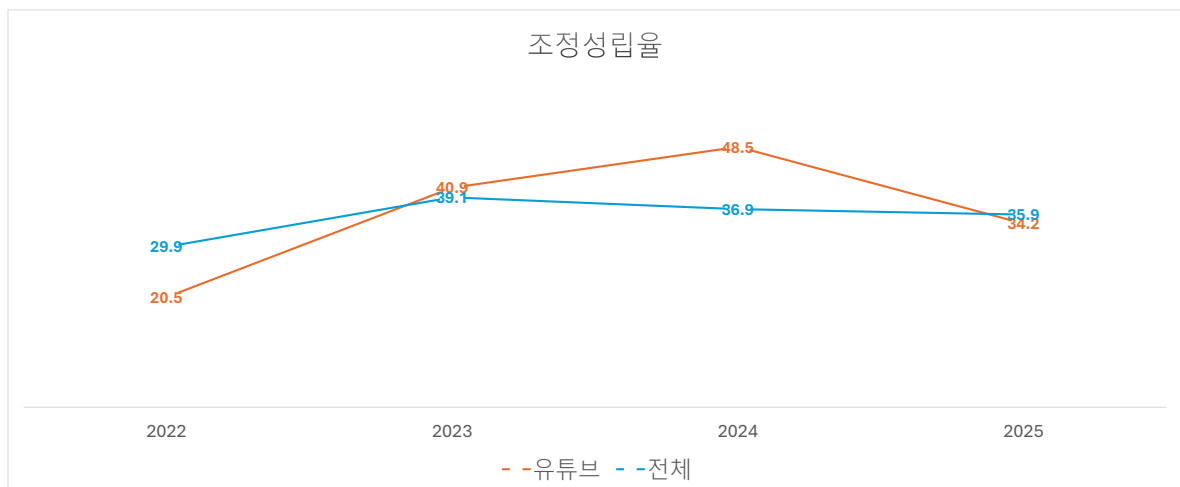
유튜브 조정 연도별 처리결과

		사건수	처리결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피해구제율
2022	직접신청	14	0	0	5	2	7	0	0
	부가신청	338	72	12	100	69	46	39	50.2
	합계	352	72	12	105	71	53	39	49.1
2023	직접신청	35	1	1	12	12	0	9	43.5
	부가신청	292	133	16	58	23	4	58	69.8
	합계	327	134	17	70	35	4	67	67.7
2024	직접신청	43	11	0	15	8	0	9	42.9
	부가신청	223	118	13	54	7	8	23	64.4
	합계	266	129	13	69	15	8	32	61.3
2025	직접신청	54	22	0	4	7	0	11	70.3
	부가신청	133	42	0	39	4	1	15	56.3
	합계	187	64	0	43	11	1	26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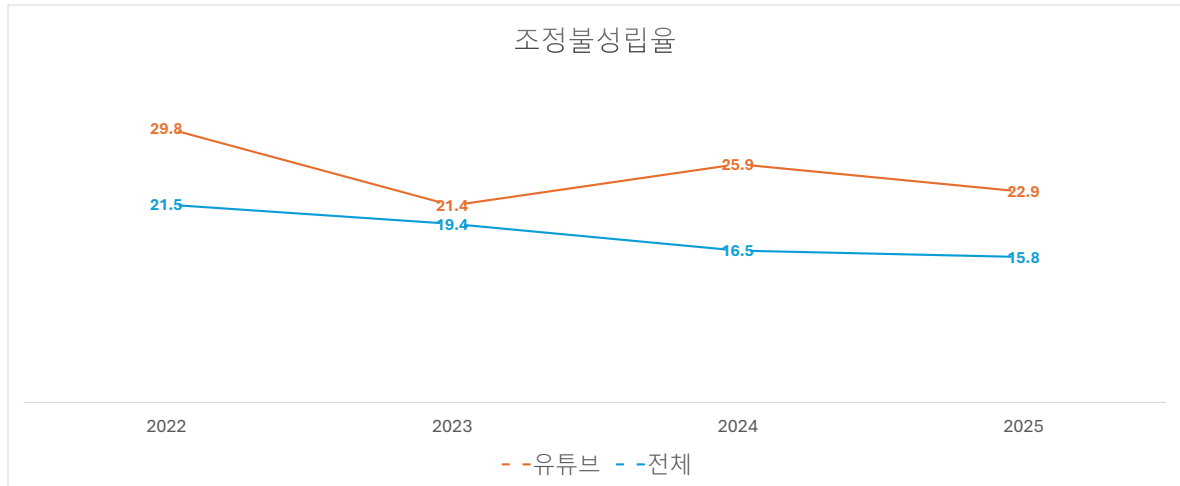
유튜브 조정 연도별 처리결과 - 전체 사건 처리결과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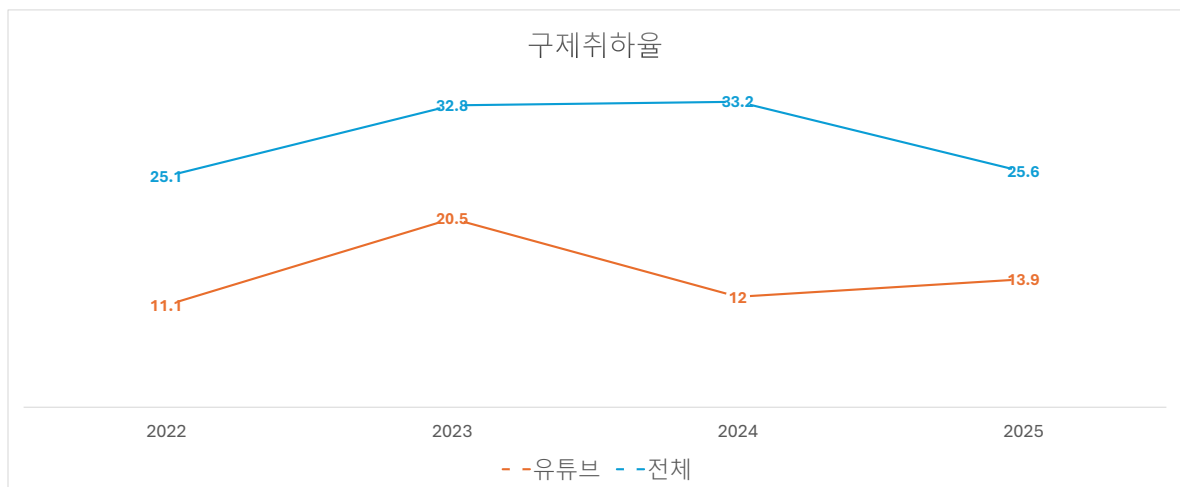
유튜브 조정 연도별 처리결과 - 전체 사건 처리결과와 비교



유튜브 조정 연도별 처리결과 - 전체 사건 처리결과와 비교



유튜브 조정 연도별 처리결과 - 전체 사건 처리결과와 비교



유튜브 조정사건 처리현황 분석 결과

- 직접 신청 사건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
 - 일반 사건에 비해 저조한 피해구제율: 최대폭 18.5% 포인트, 최소폭 6.4% 포인트, 평균 12.1% 포인트
 - 피해구제율 저조의 원인 → 일반 사건에 비해 조정불성립율은 높고 구제취하율은 낮음
- ✓ 조정불성립율: 최대폭 9.4% 포인트, 최소폭 2% 포인트, 평균 6.7% 포인트
- ✓ 구제취하율: 최대폭 21.2% 포인트, 최소폭 11.7% 포인트, 평균 14.8% 포인트

CASE - 1 유형



- 2024서울조정2474 손배
- OOO vs 인터넷YTN/ YTN-YouTube
- YTN 뉴스 → 동일한 뉴스 영상이 YTN-YouTube 채널에도 게시
- 백사장 골프 연습, 초상권 침해 주장
- 취하(유튜브 뉴스 영상 열람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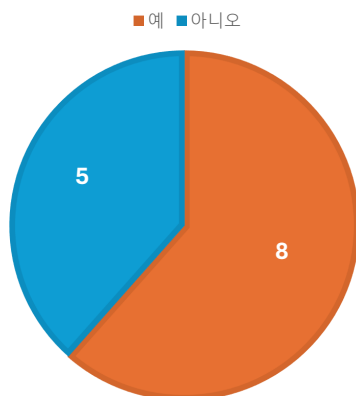
CASE - 2유형



- 2025서울조정1935·1936 정정·반론
- 더불어민주당 vs TV조선-YouTube
- TV조선-YouTube <엄튜브>
- 민주당이 반일, 반미, 카톡 검열
- 조정성립(반론보도) → 조정대상보도 영상 설명란 최상단에 반론보도문 게재

실무자 인식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1·2유형/3·4유형)의 명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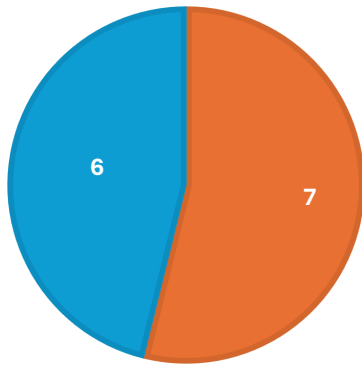


- 언론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자회사)가 운영한다면, 언론사 운영의 유튜브 채널인가?
- ✓2024서울조정1189
- ✓<조선일보-YouTube 채널> → (주)조선일보사가 아닌 (주)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운영

실무자 인식

보도의 독자성(1유형/2유형)에 따른 구분의 명확성

■ 예 ■ 아니오



- 기존 방송을 편집한 후 유튜브 채널에 게시. 1유형인가? 2유형인가?

✓2024서울조정2339

✓'쇼츠'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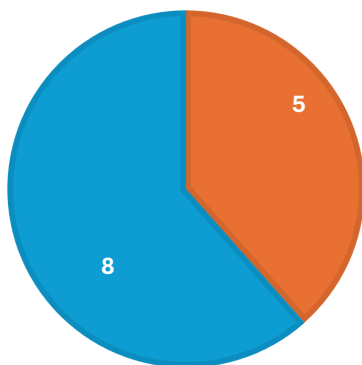
- 유튜브 게시물 → 온라인 매체에 갈무리하여 보도. 1유형인가? 2유형인가?

✓2025서울조정1937/1938

실무자 인식

보도성(2유형) 유무 판단의 명확성

■ 예 ■ 아니오



- 보도 개념의 추상성, 불명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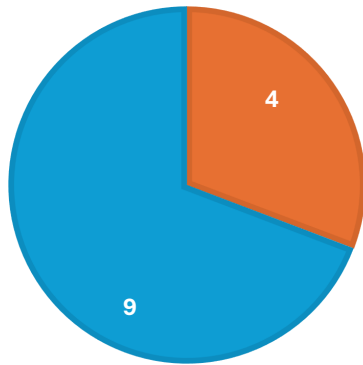
- '보도' 개념보다 '사실적 주장' 개념이 더 유의미

ex) 역사드라마, 예능 프로 등

실무자 인식

유튜브 조정의 법적 근거 유무

■ 예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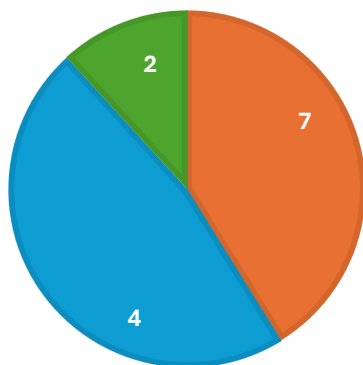


- 긍정 답변에서 근거 규정으로 언급된 조항들
 - ✓ 제1조, 제2조 제15호,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부정 답변
 - ✓ 언론사 운영의 블로그나 SNS는?

실무자 인식

유튜브 조정사건 심리진행의 타당성

■ 예 ■ 아니오 ■ 기타



- 언론 아닌 매체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 결정 → 100% 타당하다고 봄
- 직전 질문에서 유튜브 조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심리진행을 타당하다고 평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 피해구제의 필요성
 - ✓ 미디어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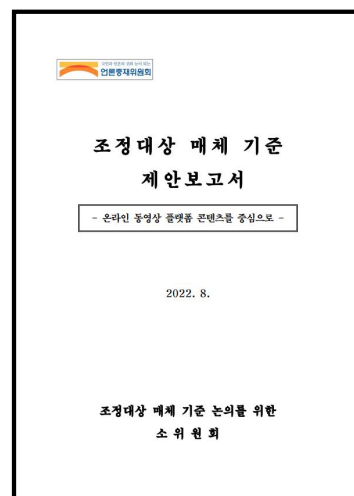
3. 유튜브 조정 관련 법적 쟁점

유튜브 조정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유튜브 조정결과는 법적으로 유효한가?

유튜브 조정의 법적 근거

- 유튜브 조정은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것인가?
- 2021년 12월 토론회(임상혁 변호사): 언론사 유튜브 → 인터넷신문
- 2022년 8월 소위원회 보고서: 언론사 유튜브 → 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 '언론보도'



조정대상 매체 기준 제안보고서(2022)

- 그러나 소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이념 및 입법목적에 따라 법률 조항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유튜브 등 콘텐츠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포섭가능한 범위에서는 **현행법상 조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함
- 언론중재법은 방송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언론의 개념과 그 운영 주체(사업자)에 대한 개별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규정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언론중재법 제1조 및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는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의미하나, **보도 수단 및 형식에 대해서는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바 언론사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주체)의 실질적인 보도 행위는 **그 전달 플랫폼이 기존 전통 매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함**
- ✓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고,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형벌법규가 아닌바, '언론보도'를 해석함에 있어 그 작성 주체별 **'언론사'의 원형적 매체(prototype platform)에 보도되는 것만으로 엄격 또는 축소해석(예컨대 신문사의 언론보도는 종이신문에 한 것만이 유효하다)할 필요와 당위성은 없음**
- ✓ 언론중재법이 '보도'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자사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유튜브 등을 통해 직접 유통시킨 경우**도 제2조제15호의 '언론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언론 매체(플랫폼)가 등장할 때마다 법에 명시적인 나열이 있어야만 규율이 가능하다면 언론중재법이 목적인 기능 구현에 충실할 수 없을 것임.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조정대상 매체 기준 제안보고서(2022)

<콘텐츠 제공 주체 및 내용·형식에 따른 조정대상 판단>

구분	제공 주체	내용·형식	조정대상 여부
1유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본 매체에 게재된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등 채널(계정)에 동일하게 게시	○
2유형		본 매체에 게재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사의 유튜브 등 채널(계정)에만 게시	보도 ○ 보도 아닌 ×
3유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사업자)에 해당 여부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등 채널(계정)에 게시	유보
4유형		다양한 정보를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은 유튜브 등 채널(계정)에 게시	×

●조정대상 판단기준

❖(제공 주체 판단) 유튜브등 채널(계정)에 콘텐츠를 게시(제공)한 주체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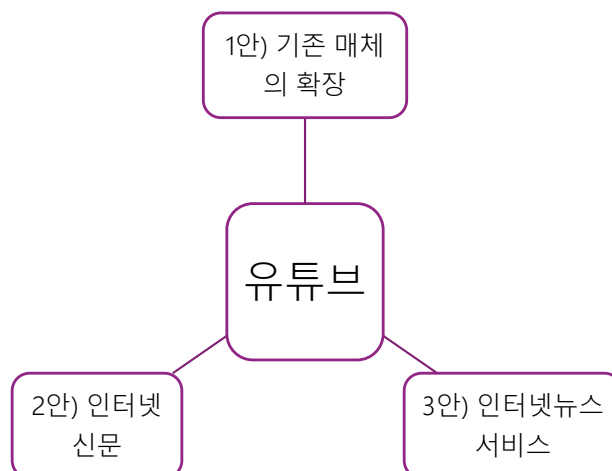
❖(내용 및 형식 판단)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이 **보도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유형의 매체인가

- 2022년 보고서 → **명확한 언급 없음. 기존 매체의 확장된 보도 형식**
- 참고로, 3유형 관련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음. 3유형이란, 언론사 아닌 자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등 채널(계정)'에 게시한 경우임

"3유형 콘텐츠라도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송 전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점, 여론 형성기능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등에서 조정대상으로 인정함이 바람직" → "사건 접수 단계에서 **조정대상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각 중재부가 2차적으로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유형의 매체인가?



유튜브 조정의 법적 근거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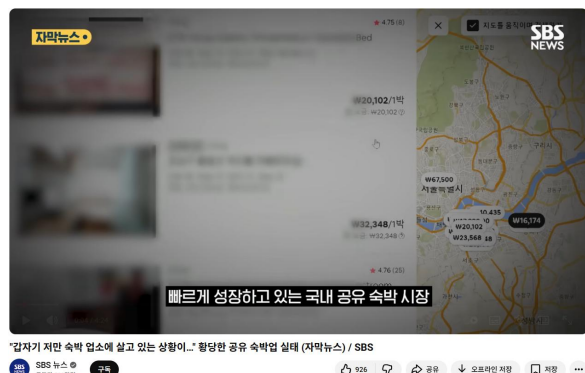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안) 기존 매체의 확장



2025대구조정130~131
매일신문-YouTube



2025서울조정1324~1326
SBS-YouTube

1안) 기존 매체의 확장

- 지나치게 파격적인 견해
- 2025대구조정130·131 매일신문-YouTube → 매일신문의 유튜브판이다?
- 2025서울조정1324~1326 SBS-YouTube → SBS 방송이다?
- 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다양한 규제(방송심의, 광고 규제 등)의 대상.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기존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인가?

2안) 인터넷신문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독자적 기사 생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일 것(단, 신문사·잡지사·뉴스통신사의 계열사에게는 요구하지 않음)
- 지속적 발행: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2안) 인터넷신문

-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가 기존 언론사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
- 기존 언론사인 경우: 인터넷신문 무등록 발행 → 과태료 부과 대상/ 활자가 아닌 영상 위주의 인터넷신문 → 형식의 파격/ 1유형에 해당하는 유튜브 채널은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 미비일 수도 있음
- 별도 법인(자회사)인 경우: 인터넷신문 무등록 발행 → 과태료 부과 대상/ 활자가 아닌 영상 위주의 인터넷신문 → 형식의 파격

3안) 인터넷뉴스서비스

-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신문법 제2조 제5호)
- 단,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부가통신사업자 아닌 자가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은 제외

3안) 인터넷뉴스서비스

- 1유형에 해당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에 부합
- 유사한 형태: 방송사닷컴 →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
- 다만, 유튜브 채널 운영주체인 언론사 혹은 별도 법인(자회사)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음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유형의 매체인가

표 11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376	178	14	14	53	21	13	52	31	71.3
방 송	317	141	13	6	77	13	6	21	40	58.7
잡 지	10				4			6		60.0
뉴스통신	176	53	6		30(2)	27		53	7	76.5
인터넷신문	2,537	870	42	40	382(12)	226	15	808	154	75.4
인터넷뉴스서비스	473	197	13	6	86	41	4	84	42	68.7
기 타	48	13			17	8		4	6	42.5
계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출처: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소결

- 유튜브 조정은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것인가? 그렇다면
 - ✓1유형 → 인터넷뉴스서비스
 - ✓2유형 → 인터넷신문
- 다양한 변수들의 존재: 1·2유형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아닌 언론사가 운영하는 1유형 유튜브채널, 영상 위주의 신문 개념의 등장

유튜브 조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

- 언론중재법 제21조(결정) 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 非언론 매체(블로그)에 대한 조정신청 → **각하 결정**
- ✓2025서울조정1619 '인터넷 국민의소리' 블로그



유튜브 조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

- 유튜브 조정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조정성립이 되었다면?
- 조정결과에 일종의 하자(결함)가 있는 것. 과연 '하자 있는 조정'은 유효할 것인가?
- 조정성립의 효력 = 재판상 화해(언론중재법 제23조) = 확정판결(민사소송법 제220조)
- '하자 있는 판결'의 효력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음 → 상소(확정 전) 또는 재심(확정 후)/ 원칙적 유효 예외적 무효. 하자 있는 판결이라도 판결로서 존중되어야(이시윤(2019), 신민사소송법, 675쪽)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 참고로, 현행 민사소송법 준재심 관련 조항(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에 비추어 법상 조정대상매체가 아니었다고 해서 준재심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음

• 죽은 사람에 대한 판결
• 심판 대상 아닌 청구에 대한 판결

유튜브 조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

- 조정 제도의 특징이자 장점으로서의 '유연성' 고려
- 조정결과를 형성함에 있어서 청구권의 유형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음
-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손해배상 → 기사열람차단
- 같은 맥락에서 부가 신청 사건, 즉 방송사 홈페이지만을 조정대상매체로 기재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방송사 운영 유튜브 채널에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는 형태의 합의도 가능 → 직접 신청 사건(조정대상매체로 유튜브 채널을 기재한 경우)이라고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까?

4. 정책적 제안: 결론을 같음하여

정책 제안

- 조정 제도의 장점 극대화: 제3유형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정 시도. 전제 조건 – 양 당사자의 분쟁해결 의사,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보 파악(참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기존 유튜브 조정의 한계: 일반 조정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구제율, 높은 조정불성립율, 낮은 구제취하율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할 필요성(참조: 언론중재법 개정안)
- 법 개정 시 유튜브 채널 유형 구분에 관한 실무상 제기된 논란들(구분 기준의 불명확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분 기준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9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1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조정·중재' 추가
- 언론중재법에 유사한 규정 신설



언론중재법 개정안(2025.11.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제2조 제19의2) 신설
- 언론사 또는 언론사의 자회사가 제작·편성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 언론 매체는 아님. 언론에 준하는 매체
- 기존의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뉴스)'와 동일한 유형
- 기존 위원회 분류 체계상 1, 2유형으로 분류된 채널들 포섭 가능
- 기존 분류 체계상 실무적으로 제기되었던 모호한 점들도 대부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
- ✓ 자회사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 ✓ 기존 뉴스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
- ✓ 보도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 없음